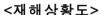
와물을 운반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힘

재 해 개 요

'14년 4월 전남 광양시 소재 알루미늄 용해공장에서 재해자가 알루미늄 Mixed Puck(칩 압착물)을 운반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

<기인물 지게차>

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자는 작업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Mixed Puck(또는 캔, 스크랩 등)을 청소하고(줍고) 있었으며, 기인물 버켓지게차(4.5톤)는 Mixed Puck을 싣고 용해로 투입구쪽으로 이동·우회전하던 중 재해자와 부딪힘

※기인물 지게차

- 용량 : 4.5톤 - 너비 : 1,744mm - 총중량 : 6,610kg

- 길이 : 4,465mm - 높이 : 2,210mm

○ 작업장 바닥은 안전 통로구획표시가 불분명하고, 통로에 스크랩통을 방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음

지게차 내부의 운전석에서는 지게차 마스트와 상승한 버켓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

재해발생 원인

- 작업장 바닥의 안전통로표시가 불분명하고, 통로에 스크랩통을 방치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함
- 지게차 작업 시 운반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
- 지게차의 마스트와 버켓으로 인하여 운전석에서 시야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유행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한 후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함
- 지게차 운행 시 운반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
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-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기 전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·넘어짐· 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

관련 법규

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-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,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

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.

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(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)